

##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서대문구 인권센터장(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9월 27일

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지	담당직무 내용
인권분야 (서대문구 인권센터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주35시간)	감사담당관 (서대문구 인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서대문구 인권센터 업무 총괄</li><li>·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실태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li><li>·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li><li>· 인권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대외 연계 사업 추진</li></ul>

\*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

### 3. 응시자격 요건

####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 · 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별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지역,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서대문구 인권센터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ol> <p>◆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법학부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li> </ul> <p>◆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보호 및 조사·권리 증진 관련업무 경력자로서 국가, 지자체, 기업체, 인권단체, 국제기구, 대학 및 부설연구기관에서의 관련분야 직무경력</li> </ul>

※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직무분야에서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유의사항

- 1)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상세히 명시되지 않을 경우 서류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2)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4. 근무 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35시간(1일 7시간)
- 연봉액 : 54,851천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0. 6.(목) ~ 10. 11.(화)<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대리접수 가능, 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처 :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인권팀(연희로 247, 제3별관 5층 서대문구 인권센터)
  - ※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우편환 10,000원) 동봉 제출
  -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 대리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수입증지 판매처 : 구청 1층 민원여권과 2번 창구, 수입증지 가격 : 10,000원

###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서류전형	2022. 10. 13.(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0. 14.(금)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2. 10. 20.(목)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2. 10. 21.(금)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조정 가능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 1차 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재공고하며, 재공고를 통한 추가 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2차 시험(면접시험)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다만 필요한 경우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 자격 부여

## 6. 제출서류

### ○ 응시원서【첨부1】 1부

- 응시수수료 : 10,000원(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 2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

### ○ 이력서【첨부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 ○ 자기소개서【첨부3】 1부

### ○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1부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첨부5】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6】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하며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원본)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 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7】’ 추가 제출
-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단,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또는 서류 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인권팀 담당 ☎ 정현아 02-330-1098